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124호

나. 제 출 자 : 김달호 의원 외 3명(찬성의원 14명)

다. 제안일자 : 2022년 03월 10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03월 16일

2. 제안이유

가. 2020.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임을 명시하였고, 2019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대북 지원사업자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음.

나. 2004. 7.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인도주의에 바탕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다. 이에 보편적 인도주의와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도협력사업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인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대북 인도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편적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포애를 증진하며,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제정안의 입법 배경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회성 인도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인도적 협력은 정치, 종교, 이념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말함.
- 북한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와 핵실험 재개 움직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인한 대북제재로 민생난이 가중되면서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인도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
- 올해 2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국경 없는의사회(MSF) 등을 통해 북한에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의 인도적 지원을 허가했지만, 북한의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

한 내로의 운송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이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잇따라 북한 공관을 폐쇄했으며, 마지막으로 루마니아 대사관이 지난해 10월 철수하면서 소통의 통로가 막혔음.
- 더욱이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면서 북한과 한·미간의 강경대치와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 한편 국회에서는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속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에 있음[참고자료 1].
- 통일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북한 내 취약계층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이지만 남북간의 정치·안보 상황에 따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었음.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1)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조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을 입법체계에 따라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구분하였음.
- 안 제1조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포애를 증진하며,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로 하여금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기초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제정안은 정부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인도협력사업”을 정의하면서 서울시가 북한 주민에게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 구호 및 개발협력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①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생략)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법률안에 포함된 교육협력사업은 교육·학예와 관련된 교육감 소관 사무이므로 제정안에서는 제외되었음²⁾.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도협력사업”이란 인도주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남북 주민 간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 구호사업 및 개발협력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긴급구호와 피해복구 지원사업 2. 보건의료협력사업 3. 환경보전, 기후변화 및 산림협력사업 4. 농수산협력사업 5. 보육 및 교육협력사업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조(정의) ①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거나 제6조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하여 집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와 관련된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대표하여 집행한다. (2022.1.5., 일부개정)

- 안 제3조는 조례의 기본원칙을 선언적으로 표현하면서, 인도협력 사업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류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시행 등을 제시하였음.
-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상황과 인도적 지원 사업 연혁을 볼 때, 인도 협력사업이 정치·외교·군사 등의 대내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음.
- 따라서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이념과 정신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갖게 됨.
 -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으로는 1991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인도성(humanity), 공정성(impartiality), 중립성(neutrality), 독립성(independence)이 제시³⁾되고 있음.
-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인도협력사업의 추진, 정책의 수립, 인도주의 원칙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 상호 신뢰와 기대 보호를 부여하고 있음.

3)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안) 외교부, 2019.7. p.5)

- 인도성(humanity): 재난에 영향받은 사람의 생명 구호 및 고통경감
- 공정성(impartiality): 사람에 따른 차별없이 수요(needs)에 근거한 지원
- 중립성(neutrality): 갈등 상황에 있는 일방에 대한 호의적 고려 배제
- 독립성(independence):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의 지원 배제

- 현재 서울시 차원의 인도협력 관련 사업을 시행⁴⁾하고 있지만,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정책추진에 변동성이 큰 문제가 있으므로, 단체장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인도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해 조례 간의 상충을 피하고 입법적 연계성과 조화,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2) 인도협력사업 계획의 수립과 추진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안 제7조)

- 안 제6조는 시장이 인도협력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4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추진실적 평가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기간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3~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인도협력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중·장기 계획 수립 기한을 정한 법령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고려하여 4년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와 정책 환류,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인도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과

4) 서울시는 2004년 북한 평안북도 룡천역 폭발사건을 계기로 최초의 인도지원을 시작했으며, 이후 법인·민간단체를 통해 농수산물, 의약품 등 인도지원과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이어오고 있음. 최근에는 2020년 유니세프를 통해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한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로 집행 실적은 없음.

함께 의회의 민주적 견제 수단을 확보하였음.

- 안 제7조는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도협력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추진위원회의 심의·자문의 내용은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등임.
- 현재 국제정세의 악화와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인도협력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바,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를 두기보다는 유사 성격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입법 효과가 있음.

(3) 인도협력사업의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시장이 인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인도협력사업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바,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서울시의 인도협력사업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도협력 사업에 필요한 지원 또한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협력체계의 구축, 사무의 위탁 등(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안 제9조는 인도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도협력사업의 승인, 물품의 반출신청, 북한 방문 등 주요 권한이 정부에 있고, 다자간 협력이 요구되는 남북교류사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10조는 인도협력사업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도협력사업은 남북 관계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라.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작년 9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되면서 서울시가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음.
- 그동안 인도협력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승인하고 통일부가 대한적십자사 등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해 왔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북 인도적 협력을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 현재의 대북제재 강화 등 국제정세와 남북 간의 정치·군사·안보 상황으로 인해 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 지속성에 대해서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 또한 인정하고 있음.
- 대북 인도협력사업은 보편적 인류애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북한의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며 대북 제재와 재해재난 등을 고려하면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대북 인도협력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민생상황을 개선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시의성과 당위성은 인정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입법화함으로써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태훈	02-2180-8063

[참고자료 1]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107374호,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21.01.14.)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포애를 증진하며 남북 주민 간 신뢰를 구축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도협력사업”이란 인도주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남북 주민 간 시행되는 인도적 지원, 구호사업 및 개발협력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긴급구호와 피해복구 지원사업
2. 보건의료협력사업
3. 환경보전, 기후변화 및 산림협력사업
4. 농수산협력사업
5. 보육 및 교육협력사업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본원칙) ① 인도협력사업은 인간의 존엄을 옹호하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인도주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인도협력사업은 정치·사회·군사적 상황에 연계하지 않고 인류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인도협력사업은 인도적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넘어 남북한 상호간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인도협력사업 과정에서 남북 주민들의 참여와 상호이해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인도협력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인도협력사업이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책무) ① 인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는 해당 사업을 공정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인도협력사업을 수행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는 남북한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는 인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도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인도협력사업 민관협력위원회) ①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도협력사업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2. 제11조의 인도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인도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도협력사업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도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도협력사업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1.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하여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도협력사업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도협력사업 승인 등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인도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할 기본 인원(이하 “인도협력사업의 기본 인원”이라 한다)과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등(이하 “인도협력사업의 기본 물품등”이라 한다)의 품목을 지정하고, 사업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② 제1항의 승인 유효기간 내에 인도협력사업의 기본 인원이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횟수에 제한 없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고 후 북한을 방문한 남한 주민이 같은 인도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승인 유효기간 내에 인도협력사업의 기본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이 법의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대북 지원 민간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남북협력 기금 우선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긴급지원의 특례) ①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의 기준과 신고 절차,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도협력사업의 정지·취소 및 조정명령
2. 인도협력사업 관계자의 방문 승인 정지·취소
3. 인도협력사업에 필요한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 정지·취소 및 조정명령
4. 인도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수송장비 운행승인의 정지·취소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인도·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민관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도협력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2. 인도협력사업 환경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도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민관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 중 일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가 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7조에 따른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행위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